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0. 27 선고 2022나1143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0. 27 선고 2022나1143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가합514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오세화

피고, 피항소인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변론 종결2022. 9. 22.

판결 선고2022. 10. 27.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가합514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0. 8. 13. 접수 제712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이유 제1의 사.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22. 9. 1.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835호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에 "을 11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종기

판사강영희

판사박이랑

별지